

효사랑가족요양병원 장례식장 건립 갈등

도심 주택가 한 가운데 자리한 효사랑가족요양병원이 지역주민들과 협의 없이 장례식장 영업을 추진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효지2동 장례식장 결사반대 추진위원회는 9일 효사랑가족요양병원 앞에서 집회를 갖고 "효사랑가족요양병원이 주차장이라고 건설을 시작하더니 주민들 모르게 설계변경을 한 뒤 조용히 장례식장으로 바뀌 운영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병원이 인근 주택들을 야금야금 매입하고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 공사소음이 발생해도 민원 한건 넣은 적 없었는데 주민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주거지역에 혐오시설인 장례식장 영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효지2동에 거주하는 주민 A(80)씨는 "병원이 장례식장을 운영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알고 항의 방문했지만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 법대로 하자는 말만 들었다"며 "이제 주민들을

주민과 협의없이 '도심 한복판 추진' 비판 여론 높아 전주시 "병원측과 협의 통해 해결 방안 모색"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면 뭐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일주일 전 대책회의를 열고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지난 8일 완산구청 건축과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전주시청을 찾아 시장과 면담을 가졌다"며 "완산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하고 지난 8일부터 반대 시위에 나섰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75·여)씨는 "집값 하락, 교통체증 증가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게 불을 보듯 훤히 다 보인다"며 "지역민들은 무엇보다도 효사랑가족요양병원이 지역민들에 대한 설명회나 협의도 거치지 않고 전북도의 장례식장 승인을 받는데 이어 전주시에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접수, 주택가 한복판에서 장례식장 영업을 준비하는

데 배신감을 넘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뒤늦게 도심 주택가 한 복판에 장례식장 설립을 추진하는 요양병원의 사업계획을 알게 된 효지2동 주민들은 효사랑가족요양병원 장례식장 신축 반대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주변 거리 곳곳에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강력한 반대 투쟁에 나섰다.

효사랑가족요양병원 관계자는 "병원 특성상 먼 타지에서 찾아와 입원한 환자들이 많은데 환자가 사망할 경우 감염예방을 위해 병실과 격리해야 하지만 병원 측에서 보호자 등의 없이 마음대로 장례식장을 결정할 수 없는 애로가 있었다"며 "병원은 언제든 대화를 통해 협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주민분들의 감정이 격해져 있어 상황이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장례식장을 시신처리구역과 민소구역, 업무구역으로 구분, 각각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춰 신고하면 된다.

이같은 시설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시는 영업신고 처리기간 30일 이내 장례식장 영업을 허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적으로는 영업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지만 전례 없이 주택가 한 복판에 장례식장이 들어서는 데 거세게 반발하는 지역민들의 여론은 전주시 행정에 큰 압박이 되고 있다.

지역내 장례식장이 부족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도심 한 복판에 이례적으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장례식장 영업을 허가할 경우, 전주시에 쏟아질 비판 여론도 부담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주택가 한 복판에 들어서는 장례식장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 여론을 고려해 병원측과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진수 기자

전주시, 불법 사금융 집중 단속

내달 31일까지

전주시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시민과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기로 했다.

시는 이달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불법사금융 신고기간을 운영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제도 개선과 단속·처벌 강화 등의 노력에 힘입어 불법사금융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의 지능화·다양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34.9%→27.9%) 등의 영향 등으로 불법사금융이 다시 성행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이에 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하는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에 의거해 자체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피해접수 및 상담을 진행하고, 전주시에 등록된 대부업체에 대한 점검·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신고사항은 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율 제한위반 및 불법 광고행위, 미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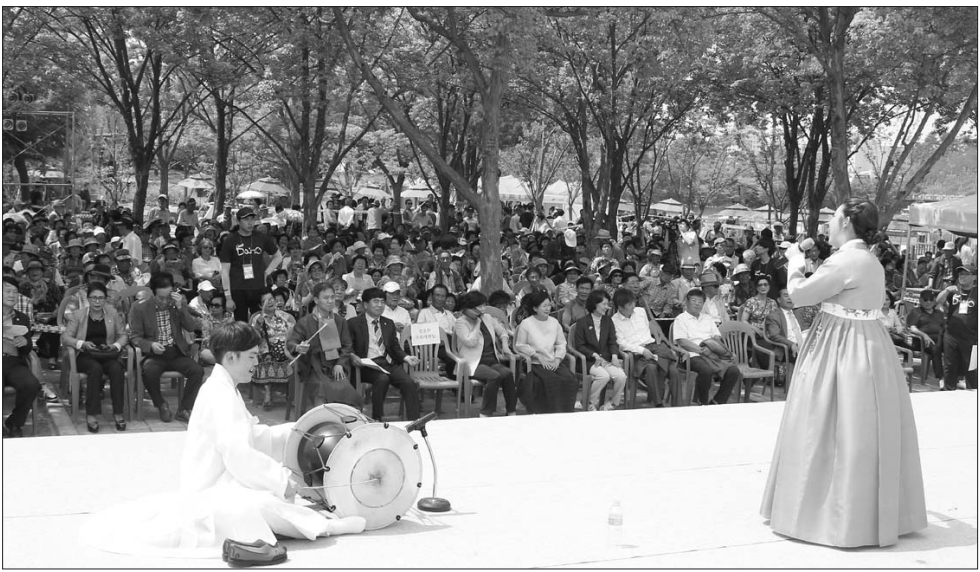
대부행위, 기타 각종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사항 등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는 금융감독원(1332)과 경찰(112), 전라북도(063-280-3258), 전주시 지역경제과(063-281-2397)로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영재 기자

자전거 훔친 50대 입건

부안경찰서는 9일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달아난 혐의(절도)로 김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일 잠 11시경 부안군 동중1길에서 A(57)씨의 2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이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씨는 익산의 모 주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금고에서 40만원 상당의 훔친 사물도 들어나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인진수 기자



2016 전주단오행사가 9일 덕진공원 일원에서 '에헤야 전주단오, 덕진연못 물맞이기세'를 주제로 열린 가운데 개막행사를 찾은 시민들이 축하공연을 보고 있다.

새만금환경청,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2곳 적발

최근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국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는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지난 3월말부터 5월말까지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콘크리트 제품 제조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등) 24개소를 단속한 결과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사업장 등 12개소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위반율 44%(11/25)에 비해 올해 6%가 증가한 50%(12/24)의 위반율을 보이고 있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비산먼지 억제 조치 미이행 7곳,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1곳, 기타 4곳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A사 등 7개 사업장은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골재를 야외에 보관하면서 방진덮개를 덮지 않았고 운반차량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았다.

남원시 B사는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시멘트 관련 제품을 생산 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신고는 국번없이 128(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8). /안진수 기자

10대 소년 감금폭행에 여친 성매매 알선까지

페이스북 활동으로 1만명이 넘는 팔로워를 거느린 10대 소년을 감금 폭행하고 소년의 여자친구까지 감금해 성매매를 시킨 1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19)군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

정군은 지난해 11월 11일부터 19일까지 전주시 한 원룸에 A(15)군을 감금하고 "집에서 나가면 죽여버린다.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린다"며 협박하고 A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A군이 경찰에 신고하고 도주할 뜻을 비추자 무차별 폭행을 가하고, A군의 여자친구 B(14)양까지 감금한 뒤 속칭 '조전만남'을 강요해 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킨 뒤 성매매 대금 38만원을 받아 챙겼다.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해 판매하는 일을 하던 정군은 A군이 많은 팔로워를 거느린 '페이스북 스타'라는 점을 노려 친구, 동거녀와 공모해 A군을 감금한 뒤 중고 휴대전화 매입과 판매 등의 글을 올리는 일을 시켰다.

정군은 또 지난해 10월 24일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던 청소년 2명이 승용차 차선 변경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미구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용주 기자

“민노총 건설현장 작업방해”

전주·완주건설기계협회, 경찰 수사 촉구

전주·완주건설기계협회의회가 민주노총 전북건설기계지부의 건설현장 작업방해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완주건설기계협회의회는 9일 전북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총전북건설기계지부의 건설현장 일감 뺏기 행위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신영용 전주·완주건설기계협회회장은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건설기계지부가 소속 노조원들만 건설현장에서 일하도록 하는 내용의 불법 단체협약서 작성 및 배차권 요구에 응하지 않자 고의적으로 사업방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노총이 건설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을 이유로 자치단체 환경과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건설사를 압박하는 등 건설사는 물론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동종 사업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노총건설기계지부는 공사현장에 장기간 집회신고를 하고 수시로 방송차량 확성기로 현장작업자와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 등을 입히고 있다"며 "이런 행위들은 엄연히 공적거래법 위반이고 건설회사, 건설기계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현재 민주노총 건설기계

노조는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을 가입시켜 노동조합법 제5조를 위반해 노조의 변경 신고 승인이 거부되고 있다"며 "동맹 제7조에 따라 민주노총 건설기계노자가 노조원들의 장비만을 사용하는 내용의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동조합법 제5조에 따르면 근로자만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조직하도록 돼있고 제7조는 노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시행령 제 9조 2호에도 노조가 만약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만일 그 기간 내에 이를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토록 하고 있다.

신 회장은 "노동조합이 아닌 민노총 건설기계지부에 건설현장 환경지킴이 위장, 현장암박 등 일감 빼앗기를 즉각 중단하고 사업자를 가입시킨 건설기계노조의 취소, 건설사와 임대사업자의 피해보상을 요구한다"며 "보상요구가 받아들여 질 때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안진수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or.kr *전자우편 : jvs@hanmail.net